

韓國의 景氣變動과 產業政策, 그 構造的 特徵

金 輽 勳*

< 目 次 >

- I. 머리말
- II. '產業政策' : 恐慌局面에서의 國家介入
- III. 恐慌의 發現形態에 나타난 特徵
- IV. 恐慌에 대한 國家의 調整 機能
- V. 結論

I. 머리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반드시 週期的인 景氣變動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主流經濟學에서도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경기 변동을 단순히 경제성장의 양적인 차이(변동)로만 보려 하며, 그 질적·구조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보지 못하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연구와 크게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후자의 관점에서 한국에서의 경기변동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를 '산업정책'으로 파악)을 분석하고자 한다.¹⁾

정치경제학(명확하게 말하면 Marx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恐慌論(혹은 產業循環論)의 관점에서 경기변동을 파악하여 자본주의경제는 본질적으로 주

* 成均館大學校 經濟學科

1) 本稿는 필자의 박사학위 청구논문(1991)의 2장과 8장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本稿에서 충분히 언급되지 못한 점이 있을 경우 미진하나마 위 학위청구논문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적인 공황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²⁾ 물론 관리통화제를 근간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일상화된 오늘날에는 產業循環이 공황국면에서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금융패닉, 은행공황을 동반하지 않은 면도 있다.³⁾ 그러나 戰後 각 국에서 상당한 정도로 주식시장의 급격한 교란이나 시중은행(commercial bank) 또는 지방은행의 不渡위기가 진행된 것도 사실이며, 이때 이루어진 국가의 개입이 물가기구를 통해 대중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도 역시 중요한 사실이다.⁴⁾ 또한 실질성장율(－)의 절대적인 침체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비율의 성장 중에 나타나는 급격한 침체와 구조조정이 실업자 증가, 기업의 도산사태와 가동율 저하, 재고 누적 등을 격화시켜 경제 각 부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때는 공황국면으로 규정되어 공황론적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물론 국면규정에 관한 객관적 指標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⁵⁾

景氣變動을 이렇게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파악할 때(특히 恐慌局面에 관

2) 정치경제학에서는 2차대전 이전에 Kautsky, Brentano 등과 전후 일본에서 井汲卓一 등 소수의 학자들이 이를 부정하여 공황소멸론으로 되었을 뿐, 서독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나라에서 맑스경제학의 범주에서는 이윤암박설, 유기적 구성 고도화설, 과소소비설 혹은 장기파동설 등 각각의 이론적 입장에 따라 공황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한편 주류경제학에서는 2차대전 이전에는 Cassel, Hawtrey 등이, 그리고 전후 정부개입이 일반화된 후에는 Heller 등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를 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바와 같이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이후 1973~74년, 1980~82년간 세계 동시적인 공황을 겪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제가 시장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限 최근의 세계적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이론으로서 Marx경제학의 의의는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게 된다. 예컨대 경제학에 관한 새로운 문제제기라 주장하는 Regulation학파는 이러한 蕊積危機(Crisis)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되어 출현하였다. Boyer(1986) 제1장 참조.

3) 이러한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바이다. 예컨대 大內力(1970 : pp.174~176) 참조. 한편 Fine and Harris(1978)는 오히려 신용의 발달이 공황국면에서 금융교란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4) 예컨대 1989년 8월 미국에서는 예금인출 사태로 극심한 유동성 부족에 처한부실저축 기관에 500억달러의 구제자금을 지원하고,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를 신설하여 1천~4천억달러로 추정되는 부실저축기관 자산의 정리를 낚당하기 위해 대통령이 제안한 '부실저축 기관 구제법안'을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한국은행, 『遇中海외經濟動向』, 1989. 2. 19~2. 25 및 7. 30~8. 5). 한편 1964~65년의 일본의 증권공황에서 山-증권이 도산하게 되었을 때 '日銀特融'으로 이를 구제한적이 있다. 그 방식은 국가자금을 투입해서 만든 共同證券과 이를 증권 보유조합에 함께 38억 2,448만주의 주식이 동결되고 이 주식의 20.6%를 13개 시중(都市)은행이, 14.1%를 5개 생명보험회사가 인수하도록 했다(『エコノミスト』, 1975. 12. 9).

5) 일본에서는 井汲卓一(1961) 등이 고전적인 생산의 절대적 축소에 한정하여 전후의 공황을 파악 하려 함으로써 공황소멸론으로 귀결되어, 그 후 70년대의 공황에 대한 설명력을 상실한 빈민 小松善雄(1976), 鶴田滿彥(1986) 등은 그렇지 않았다.

해) 다음의 세 가지 논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그것이 자본주의 경제 일반에서 고유하며 필연적인 점에서 체제 자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한다.

둘째, 공황이 그 이전 축적기에 누적된 보순이 급격하게 발현되는 것임을 생각할 때, 거꾸로 주어진 현실에서 진행되는 공황의 구체적인 발현형태는 바로 그 경제가 가진 특징 또는 문제점이 일시에 드러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단 이 후자의 점을 주목하여 그동안 한국경제에서 공황의 특징적인 발현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자 한다. 한국에서는 1970~71년, 1979~80년, (1991~92년)에 전반적인 자본주의적 공황이, 1984~85년에 해운업과 건설업에서의 ‘部門恐慌’, 그리고 1989년에 ‘中間恐慌’이 있었다.⁶⁾

끝으로 그럴 때에 전후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이 일반화된 만큼이나 순환상의 특히 공황국면에서 취해지는 국가개입 – 이를 본고에서는 이른바 ‘산업정책’으로 규정한다 –의 전개양상에 대한 분석도 또한 당연히 요구된다. 한국경제에서는 위 시기의 공황국면에서 국가개입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그 이전과 그 내용을 달리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金載勳(1991)에서 상세하게 취급한 바 있거나와 본고에서는 이러한 산업정책을 통해 나타난 한국경제의 특징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찰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공황국면에 취해지는 국가개입의 일반적 성격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II. ‘産業政策’ : 恐慌局面에서의 國家介入

현실의 공황국면을 획정하는 지표로는 기업의 倒產(부도율) 및 가동율의 저하, 실업자 증가, 생산의 일정한 감소, 투자액의 절대적 감소, 이윤량의 절대적 감소 등이 있다.⁷⁾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공황은 이러한 단순한 양적 지표의 변동 이상의 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공황을 통해 그 이전 시기에 형성된 일정한 축적의 구조가 갖는 한계가 드러나고 이에 새로운 축적의 구조가

6) 여기에서 각 시기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및 각각의 전개양상에 대해서 積論할 여유는 없다. 金載勳(1991) 참조.

7) Marx, 『잉여가치학설사』, 제2부, 백의, 482~483 및 멘시코프(1973), pp.73~82 참조.

형성되는 별개의 주기가 시작되는, 즉 공황은 사회적으로 자본의 재편 또는 구조조정(restructuring of capital) 과정이기 때문이다. Marx 경제학에서는 Marx 이후 Yaffe(1973), Fine and Harris(1976) 혹은 Altervater(1979, 1983) 등 대부분이 이 점을 주목하여 왔다. 또 Mandel(1980), Freeman(1986) 혹은 Gordon(1978) 등의 장기파동설의 입장에서는 이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⁸⁾

즉 한 주기의 축적이 끝나고 새로운 주기의 축적이 시작되는 양적·질적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본래는 오로지 시장기구에 의해(파괴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는 극히 자연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獨占體가 경제에서 중요하게 자리잡게 됨에 따라 그 양상은 상당히 달라졌다. 독점체는 그 시장지배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가격폭락과 신용붕괴에 비교적 휩쓸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자본의 재편성과정인 공황의 질적 측면 까지도 거부함으로써 축적주기의 간성을 지체 또는 왜곡되게 하였고, 공황의 정도를 오히려 더욱 심각하고 장기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⁹⁾ 국가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과잉생산된 자본을 파괴하여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뒤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개별 자본 또는 산업부문을 정리하고, 다른 한편 상대적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순환주기가 시작되도록 지원·주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합리화조치’란 이 전자의 과정을, ‘산업구조(조정)정책’이란 후자의 과정에 해당되며, 이를 短期 또는 中長期的인 국가 개입의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이라 불리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이러한 산업정책에 관한 이론적 평가 및 현실에서의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產業政策’으로 집약되는 국가개입은 산업순환 그 자체를 해소시킬 수는 없으되,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상대적인 후발의 선진자본주의와 유럽의 소규모 나라에서 좀더 의도적 계획적으로 채택되어 이를 나라 독점자본의 축적에(혹은 제국주의간의 불균등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不生產的’인 것이며 오히려 체제적 모순을 더욱

8) Rosier(1987), pp.97~106.

9) 여기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순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주요하게는 사후적이라는 것이다. 개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황의 발현 그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고, 오히려 축적구조의 개편 또는 노동계급에 대한 통제의 필요에 따라 일정하게는 국가가 공황을 촉진하기도 한다.

격화시킬 뿐이라는(Jessop의 분류에 의하면) 독점이론적 국독자론자들과 Yaffe(1973)의 견해를 강조한 Yaffe(혹은 Gough) 등의 견해보다는 자본축적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 Fine and Harris의 견해가 더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한편 더욱 적극적인 견해로서 국가의 조정적 개입이 새로운 사회로의 점진적 이행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조정론자들의 견해도 볼 수 있다. Bowles · Gordon · Weisskopf(1984, 1985) 또는 Boyer(1986), Lipietz(1985) 등의 광의의 혹은 협의의 조절(Regulation)론자들은 공황을 계기로 축적양식에 대한 사회적 또는 국가적 조정양식을 중요하게 분석하여 왔다.¹⁰⁾

그런데 이러한 국가개입을 검토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세계 금융 상의 지원에 주로 논의가 한정된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일본의 通產省(1974)이 제시한 산업(구조)정책의 정책수단 및 일본 독일 등의 현실例를 참고할 때 그러한 유형의 지원 외에도 산업구조에 관한 장기 展望(비전) 제시, 투자조정 · 가격억제 · 환경개선 · 자원절약 등에 관한 행정지도, 각종 입법조치 또는 행정기준 제시 등을 통한 무형의 개입도 중요하게 실시된 것을 볼 수 있거니와 우리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할 때 이러한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앞으로 한국경제에서의 구조조정 또는 산업정책을 분석할 때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점들로 될 것이다.

①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한편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하락시켜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현실의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다. 사회적으로 투자가 강제되어 오히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상승, 이윤율은 하락하여 왔다.(Vigier, 1981).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3차산업을 비대시켜 사회전반의 이윤율을 하락시키고, 이 부분의 노동생산성 상승의 한계는 '생산성 격차에 따른 인플레'를 격화시켰다(長島誠一, 1987).

② 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역할이 확대된 반면 국가의 지원의 대부분은 극소수의 거대기업이 차지하였다(Vigier, 1980).

③ 산업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국가부문이 거대화되었다. 그만큼 '시장의 실

10) 이하의 한국경제에서의 국가의 전망에 관한 견해 표명은 현재로서는 유보하기로 한다. 이러한 태도는 본고에서 의도하는 한국에서의 국가개입의 내용 그 자체와 과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별다른 차이를 낳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파' 못지않게 '국가의 실패' 가능성성이 커지는 것이며(小宮隆太郎, 1984), 정경 유착·부패의 가능성성이 常存한다. 따라서 산업정책 실시과정에서 그 투명성(transparency)이 문제로 되어 의회 또는 언론을 통한 공개 및 통제가 중요하게 된다(galbraith, 1985). 아울러 국가의 慷意的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가개입에 일정한 규칙·질서가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국가의 계급성 문제는 여전히 남게된다.¹¹⁾

④ 구조조정은 생산의 담당자인 노동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계급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 대체로 2차대전 이전에는 노동계급에 대한 탄압이 위주였으나 전후에는 노동계급의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¹²⁾ 예컨대 작업장 수준 혹은 사회 전반적 수준에서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新組合主義 또는 產業民主主義, 經濟民主主義가 그 표현이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현실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실질임금 감소, 노동수준 및 소득분배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었다(Harrison, 1985).

⑤ 선진국에서의 구조 고도화는 저임금노동 부문의 해외 이전과 동시에 진행된 것이고, 이는 초국적기업의 자본수출 또는 국제적 하청생산(소위 OEM 생산은 그 대표적 형태이다) 체제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저임금지역이며, 자본수출 하청생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TNC에 오히려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일부 지역(아시아 NICs, 멕시코)이 주로 이용되었다(Landerberg, 1987). 이들 지역에서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확대는 어쨌든 필연적으로 노동측의 양적·질적 세력확대와 임금상승을 낳았고 TNC는 70년대 후반 이후 대상지역을 여타의 후진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이에 대해 대응했다.

이러한 생산방식의 확대는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 우선 생산력의 세계적 확장은 세계적 규모에서의 과잉생산공황을, 특히 주로 노동집약적인 섬유, 전자, 철강, 조선, 해운 등의 분야에서 이를바 '世界部門恐慌'을 격화시켰다(Дал

11)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조절론자들, 국가의 상대적 사용성을 강조하는 그람씨적 혹은 국가를 통해 시장(또는 자본)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Bidet(1991)의 문제의식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12) Милековский(1973), Warren(1972), 通產省(1957), Adams & Ichimura(1983).

13) Pelinka(1987) 및 Katzenstein(1987) 등 참조.

ин, 1980). 바로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고,¹⁴⁾ 국가간의 세계적인 경제적 긴장이 격화되어 나타난 것이 ‘신보호무역주의’이다.¹⁵⁾ 반면 이 과정에서 중·후진지역에서 선진공업국에 대한 생산재 수요가 급증하여(平川均 1983 ; Balassa, 1987), I부문의 국제적인 불균등발전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한국경제에서 정부는 각각의 공황국면에서 부실기업 정리 혹은 산업 합리화조치와 투자조정조치, 계열기업 정리 등을 통해 과잉축적된 자본을 파괴하고, 8.3 사채동결조치와 한은특용 등으로 신용체계의 붕괴를 막았다. 아울러 국가는 축적주기의 간신, 축적구조의 이행을 주도하고 지원하였다. 60년대 소재부문 수입대체·경공업 수출산업화체계→70년대 가공 조립형의 중화학공업 수출산업화 체계→80년대에 부품생산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법률·제도 정비, 새로운 중장기 축적전망 제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일상적으로 산업정책이 추진되었으되 산업순환상의 이러한 국면에서 정책의 질적 변화들이 선도하여 기존 자본의 파괴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의 재편성-구조조정과정을 추동하였던 것이다.

III. 恐慌의 發現形態에 나타난 特徵

1. 생산재·축적기금의 해외의존과 공황의 발현양상

일반적으로 주류경제학의 국제경제학 이론에서 소득증가→수입증가→대외균

14) 각 국에서 산업(구조조정) 정책이 중요한 문제로서 대두된 직접적 계기는 주로 세계적 과잉 생산공황 속에서 국제경쟁력 문제와 관련되어서이다. 70년대의 전반적인 세계공황과 ‘세계부문 공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공업국에서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점, 그 이전에 영국에서 1930년대와 전후 60년대에, 그리고 후진자본주의로서(미국), 독일, 일본에서 1920~30년대에 이미 그 정책들이 실시되었던 데서 이 관계를 알 수 있다.

아울러 여기에서 산업정책이 영국 미국 등에서는 사후적·소극적으로,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상대적인 후발의 선진자본주의와 유럽의 소규모 나라에서 좀더 의도적·계획적 적극적으로 채택되어 이를 나라의 불균등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주목해야 할것 같다. 이런 차이는 각 사회에서 자본의 발생사적 특징과 맞물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15)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EC를 중심으로 고조되어 온 경제적 긴장에 관한 국내에서의 최초의 試論으로서는 金載勳(1987) 참조. 서독에서의 있었던 이에 관한 논쟁의 정리로서는 이수훈(1991), 황병덕(1991)과 이국영(1992)을 참고.

형 회복을 위한 긴축정책→소득증가율 감소의 메카니즘을 설명한다. 그러나 단순히 증가율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inder(1961, 1967)의 지적과 같이 생산재를 자급할 수 없는 후진 경제에서는 훨씬 심각한 문제를 갖는다. 이 경우 활발한 자본축적은 곧 생산재의 도입을 증가시키지만 그러한 '수입최소량'만큼 '수출최대량'이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왕성한 성장은 곧 外換갭의 문제를 야기시켜 성장의 한계(天井)에 부딪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와 전혀 대조적으로 예컨대 전후 줄곧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서독(52년이후), 일본(혹은 부분적으로 대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산업순환 이 완만하게 진행된 점이 돋보인다.

생산재 생산부문이 취약한 한국경제에서 好況期의 資本蓄積은 필연적으로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입을 급증시켰다. 產業聯關表 상에 나타난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계수를 보면 投資의 수입유발효과가 1975년 0.52, 1980년 0.42로 최종수요 항목 중 가장 높았다. 국내총고정투자와 재화용역 수입간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1단위의 국내 총투자는 1962년~69년에 1.19단위의 수입을 유발시켰는데 1971~84년간에는 더욱 증가하여 1.478단위의 수입을誘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2=0.938$). 특히 축적이 황성하게 이루어진 호황 국면에는 자본재 도입의 증가율이 두드러져서 1967, 68년에 각각 80.2%와 71.9%(77년의 23.9%에서) 78년에 68.9%, 그리고 91년 9월 현재 자본재 수입액 150억달러도 24.7% 증가하였다(소비재 수입은 24.7% 감소한 39억달러). 이 중 예컨대 석유가격 상승이 문제로 된 80년 직전의 상황을 보면 78년에 자본재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고, 제2차 석유위기에 따른 원유수입액증가는 79년에,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80년에 와서야 급증하였다. 이렇게 해서 67년에 1,334억 달러 수준이던 경상수지 적자가 70년에 6,225억 달러로, 77년에 1,230달러의 일시적 흑자였다가 80년에 53.2억 달러 적자로 되었다. 그리고 88년에는 141.6억 달러의 흑자에서 91년에는 96.6억 달러의 적자로 되었다.

構造調整이 진행되고 있는 90년 전후에 와서도 생산수단의 상당부분을 자급하게 되었더라도 새로운 產業으로의 확장은 새로운 생산수단을 역시 선진자본주의로부터 도입해야 가능하다.¹⁶⁾ 이미 상당한 蓄積이 이루어진 부문의 단순工程에서는 국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이 부문에서는 投資가 주로 대

16) 한국산업은행 기술부, 『산업기술 동향』(1991), p.8의〈표 : 생산설비의 국산화실태〉 참조.

체 투자의 형태일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설비에 대한 수요가 그리 크지 못할 것이다.

해외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현지공장에서 필요한 설비의 대부분을 제3국에서 구매함으로써 자본수출이 투자재 수출과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⁷⁾

여기에 축적의 기금을 차관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호황기의 왕성한 축적은 그만큼 외채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급격히 성장을 정지시켰다. 호황기였던 1967~71년에 전체 축적기금 중 외자가 39.19%였고, 70년대에도 일시적인 중동건설수입 증대, 직접투자 활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축적자금의 조달구조는 여전히 차관을 중심으로 한 외자의 비중이 큰 것이어서, 1978년에 민감설비자금 조달의 구성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요 민간설비자금 중 31.6%를 외자로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¹⁸⁾ 그래서 68년에 5.9%이던 원리금 상환비율이 1970~71년에 12.3%, 13.3%(13.9%, 16.3%)로 되었다. 또한 3저호황을 거친 1992년에 와서도 외채가 다시 증가하여 2월말 현재 총외채가 400억달러를 초과했고,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의 해외현지 차입이(89년말 87억 달러에서) 1991년말 13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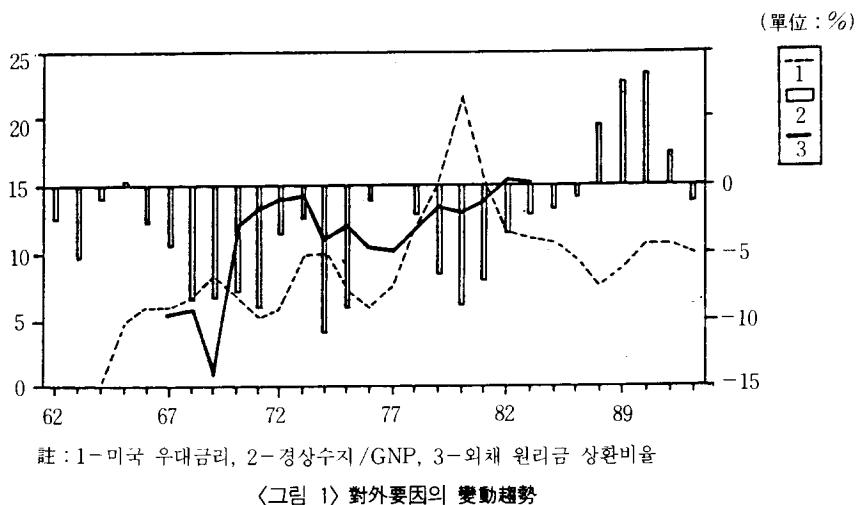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상승하기 시작한 國際金利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1968년 5월에 프랑스의 정치경제 파동을 계기로 촉발된 선진공업국의 금리상승은 67년 말 6.00%이던 미국의 우대금리가 1969년 말에 8.50%로, 유러달러 금리는 6.25%에서 10.13%로 되는 것이었다. 또 1977년말에 7.75%이던 미국의 우대금리가 79년에 15.25%, 80년에 21.5%로 상승하였고 유러달러 금리는 7.19%에서 14.44%, 17.55%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통화량 증가의 주된 요인인 해외부문에서 1970년 혹은 1978년부터는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통화환수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러한 외환위기아래에서 긴축정책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이렇게 해서 공황국면으로의 이행이 시작되었다. 예컨대 1970년 전후의 요인별 통화량 변동 상황을 보면 <表 1>과 같다.

17) 매일경제신문, 1991. 9. 3.

18) 한국산업은행, '최근의 설비투자 동향과 당면과제', 『산은조사월보』, 1982. 12, 38.

전경련의 『한국경제정책 40년사』에서는 70년대 후반에 총투자액의 35.4~49.8%를 도입된 외자가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기준, '공업기반의 구축과 국제경쟁력 제고', 『한국경제정책 40년사』, 전경련, p.793.

이렇게 그간의 한국경제에서는 축적 외환 및 외채위기 蕩積의 정지, 공황으로 이어지는 構造가 후진적인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가 낳은 공황발현 메카니즘이었다.



〈表 1〉 通貨量 變動과 그 要因

(단위 : 억원)

	通貨量增加	公共部門	民間部門	海外部門	其 他
1967	358.5	6.0	96.4	365.5	-97.4
68	298.1	-42.0	70.3	277.7	-7.9
69	681.1	-39.4	266.7	412.5	41.3
70	885.2	-168.9	539.0	72.1	443.1
71	543.8	-110.2	612.4	-363.2	404.7
72	1,485.5	1,079.9	790.8	-97.2	-288.3
1972 1/4	-33.2	-14.7	292.3	-445.2	154.3
2/4	232.1	1.5	461.5	-238.9	8.0
3/4	832.3	196.2	342.6	409.1	-117.2
4/4	1,156.0	927.1	305.6	187.8	-333.4

資料 : 韓國銀行, 『統計月報』, 1973, 各月號.

2. 負債에 근거한 獨占자본간의 蕩積 競爭과 公황

그간의 산업확장적 축적기에 國家的 信用體系와 租稅지원 아래, 신설 부문을 선점하여 독점력을 확보하고자 전개된 독점자본간의 競爭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獨占資本의 소극적 내지 정체적인 投資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이

론과는 다른 것이며, 독점체 간의 競爭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수요가 주어질 때는 競爭단계보다 오히려 더욱 치열하고 적극적이라는 Katzenstein (1967)과 北原勇(1984)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축적이 國內外 借入資金에 의존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기업들은 財務構造가 취약한 문제점을 고질화하여 왔다. 기업의 재무상태는 일반적으로 나라간 비교에 인용되는 장부가액으로 볼 때에도 나타나거니와 金漢應(1987)과 같이 시장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더욱 뚜렷해진다. 예컨대 1985년에는 상위 10%의 기업 중 41%가 자기자본 비율 5% 미만인 상태에 있으며, 전체 상장기업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은 12.8%였는바, 일본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 44%, 미국의 45%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기업들의 이러한 취약한 財務構造는 90년대에 들어오더라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80년대 후반에 일시적으로 증권시장의 대호황으로 변화의 여지가 보이기는 했으나 3저호황이 지난 후 다시 악화되었다. 자기자본 비율이 1986년 22.2%에서 1989년 28.2%까지 개선된 이후 다시 1991년 24.4%로 하락하였다. 부채비율은 1989년의 254.3%에서 309.2%로 다시 악화되었다.

이제 취약한 財務構造가 產業循環의 전개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자. 金漢應(1987)은 주식회사는 상향잠재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하향위험에 대해서는 0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투자가 덜 신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각 기업, 특히 대기업일수록 주로 國家가 제공하는 특혜적인 자금에 의존해서 사업을 막대하게 확장할 수 있었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國家가 다시 지원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은 끓을 것이 없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더구나 產業부문의 확장에는 막대한 고정자본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장치산업을 선점해 규모의 경제에 근거한 독점력을 확보하려 하는, 독점적 자본집단간의 競爭에 매개되어 財務構造를 돌보지 않는 무분별한 蕪積이 진행되게 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렇게 취약한 독점적 축적구조는 공황의 발현형태에도 뚜렷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기업들은 공황국면에서 전혀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信用危機와 전반적인 교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축적기에 내외 부채를 차입하여 경쟁적으로 투자에 나섰기 때문에, 유형고정자산의 증가율이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자기자본 비율의 급락 및 부채비율의 급증이 따랐다. 이 때 엄습한 외환 및 외채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긴

축-자금압박 속에서 각 기업의 단기차입금이 급증하는 신용공황의 상태에 이르렀다. 예컨대 1966년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상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15.9% 수준에서 1970년 19.5%, 1971년 22.8%로 되었다. 게다가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시작된 투자사업을 위해서는 단기차입금까지도 고정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결국 과다한 금융비용과 운영자금 부족으로 연쇄부도에 이르렀다. <表 2>에서 이러한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축적기의 과열, 공황기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表 2> 資本蓄積과 負債 關聯 地標

	負債比率	類型固定資產增加率	固定比率	純運轉資本對總資本*	金融費用對賣出額比率	企業利益率	總資本經常利益率
1966	111.7	—	101.7	—	5.65	13.48	7.78
68	201.3	—	146.2	11.2	5.90	10.60	5.33
70	328.4	—	195.2	7.5	9.15	9.46	2.49
71	394.2	—	243.3	3.5	9.86	9.27	0.99
72	313.2	—	194.6	10.8	7.08	10.55	3.77
73	272.7	—	169.8	13.0	4.61	12.77	7.90
1976	332.0	29.3	184.5	7.3	4.04	9.54	4.80
78	370.5	36.6	211.8	4.5	4.22	9.72	4.64
79	419.9	33.5	233.2	1.1	5.02	9.42	3.39
80	491.5	27.1	255.4	-0.6	6.19	7.50	-0.18
81	445.8	22.2	252.4	-2.5	6.63	8.91	0.75
83	368.0	9.9	228.0	-1.5	4.47	8.32	2.80

資料：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表 3> 期間別 投資의 增加率과 構成 比較

	한 국			대 만			일 본		
	70~72	79~81	76~78	74~75	81~82	76~78	74~75	82~83	76~78
성장율	7.4	2.2	12.2	2.2	4.5	12.5	0.6	3.2	5.23
고정투자	2.5	-2.1	27.1	17.2	9.8	9.8	-5.1	0.3	5.7
주택	13.6	16.5	18.3	9.9	9.3	13.8	23.0	19.4	23.8
비주거용건물	19.2	16.0	16.0	11.6	16.6	13.7	16.4	16.6	15.6
기타구조물	26.5	23.5	23.5	17.2	14.2	20.7	25.7	27.7	25.2
운수설비	16.2	13.1	13.1	10.6	9.6	9.8	7.9	7.9	8.0
기계설비	21.7	31.1	30.8	50.4	44.9	41.6	27.1	28.7	27.3
총고정투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資料：韓國銀行, 『조사통계월보』, 各月報。

日本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年報, 1982, 1988.

臺灣,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1985.

이러한 순환상의 특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나타난다. <表 3>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고축적기인 1976~78년에 대해 불황기인 1970~72년과 1979~81년의 投資증가율 감소가 일본(74~75년과 81~82년에 공황 및 불황) 혹은 대만(74~75년과 82~83년에 공황 및 불황)에 비해 훨씬 더 커졌다. 또한 고정투자의 형태별 구성 면에서도 공황 및 불황기에 대만, 일본의 경우에는 총고정투자의 비중이 거의 변동이 없으며, 중소기업 위주의 產業構造라고 평가되는 대만의 경우는 오히려 그 비중이 더 증대하였다. 즉 그동안 한국의 경우 불황기와 출적기에서의 투자율의 변동이 극심하고 더구나 기계설비投資는 더욱 변동이 심했다. 이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한 연구자료에서도 나타난다.¹⁹⁾ 이러한 순환상의 특징이 獨占資本 중심의 蕩積構造와 더불어, 내외의 부채를 통해 진행된 그간의 蕡積課程, 그에 따른 부실한 재무구조가 낳은 귀결인 것으로 보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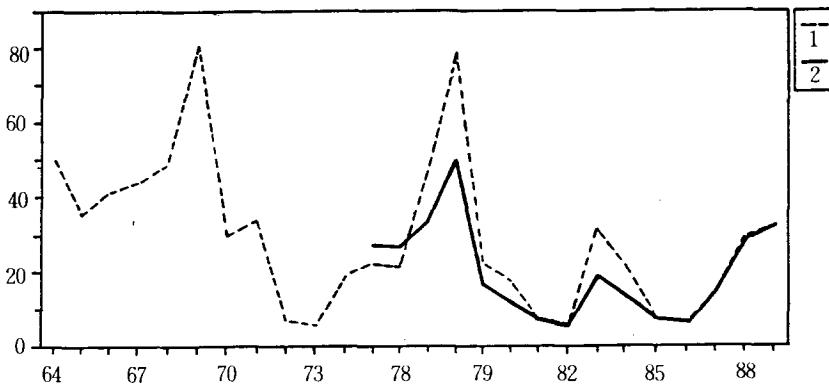
3. 產業循環과 投機 및 物價上昇의 問題

好況 말기에 호황의 수준을 더욱 격화시켜 공황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또 다른 要因으로 각종 投機열풍이 있다. 그동안 不動產投機가 큰 영향력을 미쳤으므로 토지가격의 상승율을 그 지표로 살펴보면 바와 같이 특히 好況의 말기인 1969년과 1978년에 전년도에 비해 80% 상승하였고, 1983년과 1989년에는 30% 이상 상승하였다. 일반적으로 호황말기에서는 자본의 과잉상태에서 자본집적의 최소 규모가 증대하여 생산자본으로 전화될 수 없게 된 소규모의 자본들은 모험적인 길—投機, 信用詐欺, 株式詐欺—에 들어서게 되는, ‘자본의 過多(plethora of capital)’ 현상에 관해서는 이미 이론적으로 밝혀진 바이다.²⁰⁾ 그런데 모두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토지투기가 세계 유례없을 정도이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토지에 관한 토지공개념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1992년 현재의 地價 하락추세는 장래 산업순환의 국면 변화에 따라 한순간에

19) 1971~72년에 실질GNP와 기업투자의 하락율은 88.16%, 31.02%였으나 미국은 1973~75년에 8.5%, 2.0% 하락하였고, 1979~80년에 17.77%, 19.13% 하락하였으나 1981~82년에 미국은 6.3%, 1.4% 하락하였다.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84. 10, p.26.

20) Marx, 김수행 역, 『자본론』(상), pp.298~299.

변화할 수도 있다. 과거에도 78년과 83년 직후 각종 투기억제제도가 마련되었으나 다시 89~90년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資料 : 1963~74 한국감정원, 『전국 주요도시 地價지수』, 1975.

1975~89 건설부, 『地價動向』, 199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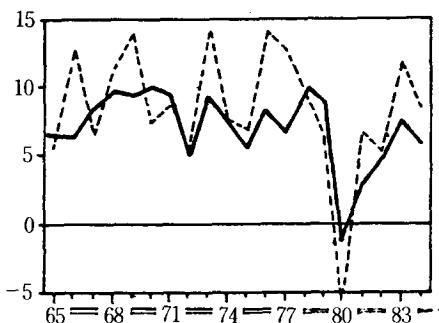
註 : 1-주요도시 地價上昇율, 2-전국 地價 上昇율

〈그림 2〉 地價上昇 趨勢

한편 ‘과소비의 문제’도 이 산업순환과 관계되는 한 현상인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변동추세를 볼 때 항상 호황 말기에는 이러한 부동산투기와 함께 소비재에 대한 과수요가 격화되었다. 예컨대 1970~71년에 민간소비지출의 증가율이 9.9%, 9.4%였고, 78~79년에 9.9%, 8.9%였는 바 이러한 증가율은 GNP증가율 7.6%, 8.8%와 9.7%, 6.5%를 능가하는 수준인데, 이러한 현상은 거의 이 시기에만 나타나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비재에 대한 過需要는 한편으로는 바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황 말기의 투기의 일부로서 나타나는 점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렇게 해서 불로소득을 획득한 계층에 의한 과소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70년대말의 경우 건축자재부터 시작해서 육류와 고추 마늘 참깨 땅콩 양파 채소류 등의 생필품의 파동이 있었는 바 이는 많은 부분이 사재기—투기에 의한 것으로 거론되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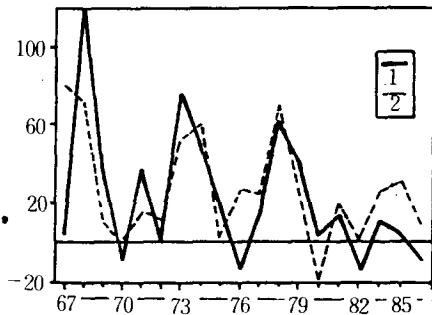
물론 이러한 투기는 이러한 消費財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증가를 기반으로 했을 것이며 특히 각종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이

21) “78 경제 10대뉴스”, 『이코노미스트』, 1979. 1, pp. 74~75.



註 : 1-소비지출 증가율, 2-GNP증가율
1980년 가격기준, 단위 %

〈그림 3〉 民間消費支出의 增加趨勢



資料 : 경제기획원, 『한국경제지표』,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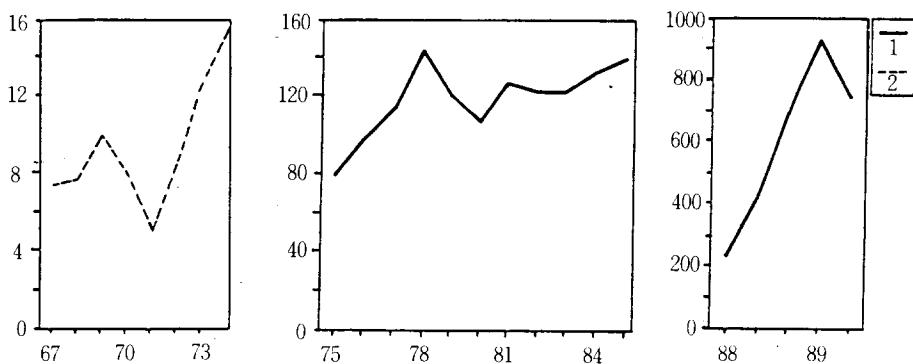
註 : 1-소비재수입, 2-자본재, 단위 %

〈그림 4〉 消費財 輸入의 增加趨勢

려한 시기에 함께 급증했다.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대체로 이는 '좀 더 넓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 급증과 함께 불로소득계층 혹은 고소득계층의 부담없는(무분별한) 소비확대에 의한 것이라. 이러한 소비증가가 소비재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필연적이어서 형태별로 본 소비재 수입증가율이(67~68년 민간소비 증가율 9.7%, 9.4%에 대해 118.9%, 37.1%와 함께) 1971년에 36.1% 1978~79년 60.5%와 40.7%로 되었다. 바로 전년도의 왕성한 축적국면에서 있었던 자본재 도입 급증에 이어 나타난 이러한 소비재 수입 증가는 금액 면에서 보면當該年度 자본재 수입액의 약 1/5에 상당하는 규모이지만, 外換 및 外債危機를 매개로 공황국면으로 이행하는 한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 분명하다. 이렇게 과소비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한국사회의 불로소득계층 혹은 지도·지배계층의 문제이며, 경제적으로 볼 때는 산업순환상에 특히 두드러져 경제의 파국을 격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는他人資本에 근거하여 과투자를 전재함으로써 생산력 확충에 기여를 한 측면도 있는 반면 또한 경제의 파국을 격화시키는 데에 기여를 하기도 한 독점적 대자본의 투자행태와 거리가 크게 멀지 않는 것이라.

이와 동일한 범주의 것으로서 株式市場의 문제가 있다. 주식시장의 변동도 기본적으로는 산업순환의 각 국면과 관련되는 것인데, 그간의 추세를 보면 호황과 함께 주가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호황말기에 극도의 투기적 양상을 보였다. 불로계층의 투기와 함께 이러한 추세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이 주식시장에서의 대자본의 소위 '財테크'와 극도의 투기를 더욱 격화시켰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주식에 대한 대중의 不信과 주식시장의 낙후성은 60년대 '증권파동' 이래 90년대 초까지 계속되게 하였다.



資料 : 경제기획원, 『한국경제지표』 및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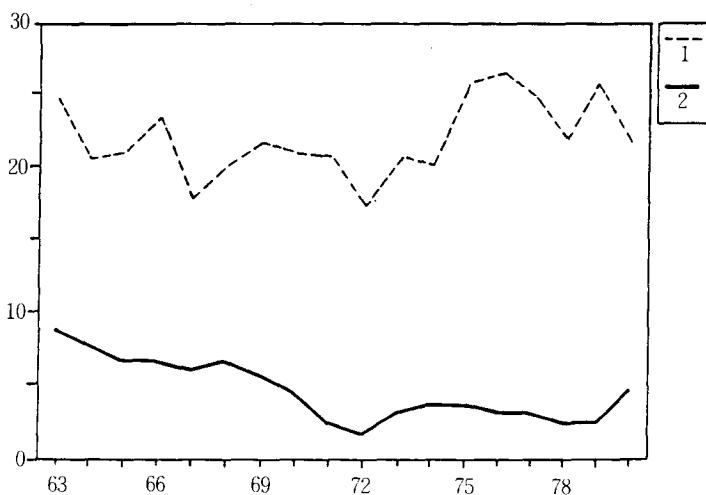
註 : 1-주가지수(1980년 100임), 2-주식거래량

〈그림 5〉 證券市場의 變動趨勢

IV. 恐慌에 대한 國家의 調整機能

1. 財政을 통한 調整機能

產業循環에 대한 現代 國家의 조정적 기능으로서 우선 중요시 되는 것이 國家 財政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소극적으로는 자동안정장치와, 적극적으로는 재량적措置가 있다. 歲入의 구조를 보면, 총조세 중 직접세의 비중이 그간의 資本蓄積過程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일반회계 상의 비중이 1980년에는 32.1%에 머물렀고 그후에도 1988년까지 40%를 넘지 못해서 간접세 위주의 세제를 유지하여 왔다. 歲出에서는 사회보장비의 비중이 88년 현재 4.6%에 머물러 있다. 이런 수준은 가령 76년 현재 서독 48.8%, 미국 36.1%, 일본 19.6%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회개발비의 비중으로 보아도 89년에도 8.8%에 머물러 1973년의 9.0%를 능가하지 못했다. 이러한 세입 세출 구조에서는 自動安定裝置로서의 재정의 역할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이에 관한 추세를 〈그림 6〉에서 볼 수 있다. 1972년과 79년에 일반 회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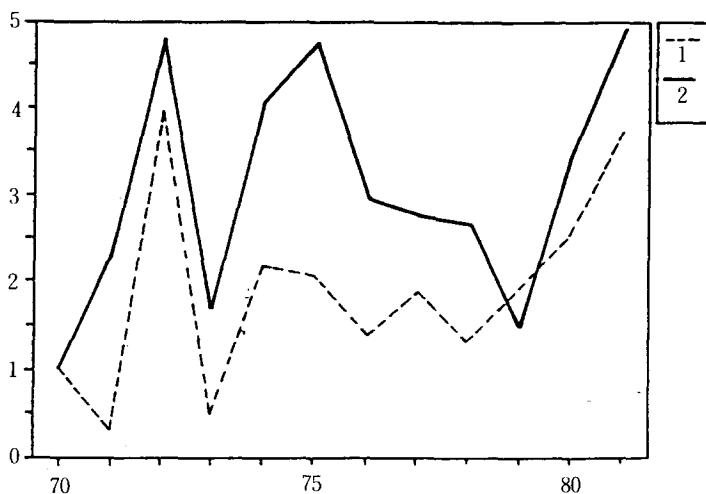
資料：재무부, 『결산개요』, 각년도

註：1—경제개발비, 2—보건 및 사회보장관련 지출
일반회계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

〈그림 6〉歲出構造의 趨勢

세출 중에서 보건 및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즉 불황기에 사회보장비의 지출을 증가시켜所得감소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資本에 대해 가치실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財政지출 중 硬直性支出에 해당하는 방위비, 일반행정비 등의 비중이 70년대 줄곧 40% 이상의 수준이고 1980년에는 45.2%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미국 25.6%, 서독 13.8%, 일본 10.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截量的措置의 가능성도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위의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회계 중 경제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蕊積이 왕성하게 진행될 때에는 높아지지만 1972년과 80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만큼의 경직성 비용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전체 세입에서 조세 및 전매익금이 94.5%(1980년)를 차지하여 產業循環에 대한 세입의 탄력성도 부족하다. 이는 일본 63.9%, 대만 73.9%와 비교되는 수준이다. 그러면 그간의 세입·세출액의 규모 변화의 추세를 중심으로 그간의 產業循環에 대한 國家財政의 역할을 추적해 보자.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의 회계를 통합한



資料：財務部, 『한국의 재정통계』, 1981 및 1983.

註：1—중앙정부의 재정적자, 2—공공부문의 적자；GNP에 대한 비율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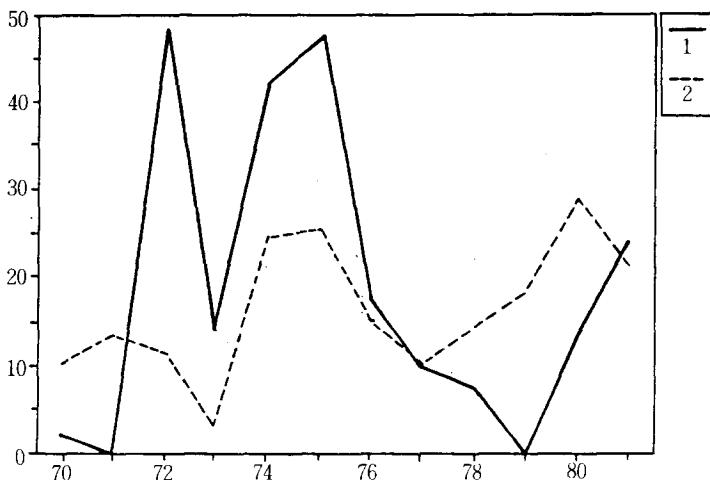
〈그림 7〉 財政赤字의 趨勢

공공부문의 적자규모를 GNP에 대한 비율로 보면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2년에 4.8%, 80~81년에는 3.4%, 4.9%로 증가하였다. 중앙정부의 적자를 GNP에 대한 비율로 볼 때도 72년과 81년에 증가한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경직성 비용의 존재 때문에 공황 및 불황국면에서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財政적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²²⁾

아울러 이 때 발생한 재정적자의 보전방식을 검토해 보자. 공공부문의 적자

22) 공황국면에서 취해진 주요 조치들 속에 반드시 포함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세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가령

- ① 69년에 취해진 부실기업 정리에서 5개 철강관련 업체들에 대해 '철강공업육성 방안'을 통해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등이 감면되었다.
- ② 72년의 산업합리화조치에서는 합병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부동산투기억제세 등록세 면제, 지정산업 또는 중요산업에 대해 특별감가상각율을 20~30%에서 40~80%로 인상, 국내 기자재에 의한 투자에 10% 법인세 소득세 공제,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을 손금처리, 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세 1976년까지 면제 등의 세제 상의 지원이 있었다.
- ③ 81년 4월에는 '產業合理化 및 투자장려책'을 통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시행부로 확대하였다.
- ④ 해외건설과 해운산업 합리화 때에는 부동산 매각에 대해 법인세 양도세 면제(121억원), 채무인수액 손금산업에 따른 면제(501억원), 취득세 등록세 면제(194억원) 등을 제공하였다.



資料 : 재무부, 『재정금융통계』, 1983,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1983.

註 : 1 - 한은차입금 / 화폐발행고, 2 - 소비자물가 상승율

〈그림 8〉 韓銀 借入金의 趨勢

를 補填한 내역(IMF 기준) 중 한국은행 차입금을 화폐발행액에 대한 비율로 보면 〈그림 8〉과 같이 1972년과 1974~75년, 그리고 1979~81년의 공황 및 불황기에 크게 증가했다. 또 이 시기의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1974~75년과 79년과 같이 原油價의 상승도 원인이 되었지만 봇지않게 72년의 경우를 통해 韓銀借入金 증가로 화폐발행고가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는 공황 내지 불황기에 주로 화폐발행고를 증가(인플레 야기)시키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韓銀차입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적자재정의 재원을 마련하였고 이 자금으로 위축된 대중의所得과 생계비를 보조하기 보다는 資本蓄積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대체로 전반적인 투자의 급격한 감소 속에 이 중 많은 부분은 이 시기에 취해진 不實企業調整, 중화학 投資調整 등의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金融을 통한 調整

1961년 6월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2년 5월의 '한국은행법' 제정

으로 금융은 거의 재정자금과 다름없이 운용된 것이 그간의 실정이었다. 蕊積期에 실세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 정책금융을 통해 기업의 자본축적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공황국면에서는 그 뒷처리를 모두 떠맡았다. ① 1969년 부실기업 정리 직전에는 해외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 또는 산업은행이 代佛해준 액수가 1월에 10.14억원, 2월에 10.26억원, 4월에 7.885억원, 6월에 8.241억원, 7월에 7.031억원, 8월에 6.861억원 등이었다.²³⁾

② 부채를 갚지 못하는 55개 기업들이 은행관리에 들어감으로써 이들 업체들에 대한 채권이 동결되었다. 이들 기업에 대한 法定管理 또는 은행관리제도는 일시적으로 빛에 쫓긴 기업에 대한 法定管理 또는 은행관리제도는 일시적으로 빛에 쫓긴 기업에 대해 그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동결시켜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가 부도의 사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노력을 하기 보다는 권력과의 유착을 이용해 法定管理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법정관리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인플레 하에서는 크게 유리하게 될 수 있었다. 法定management가 시작된 다음에도 경영상 문제는 많았다. 법정관리인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기업운영을 담당 하지만 회사내부에 거미줄처럼 얹혀있는 이해관계로부터 소외되고, 사실상 모든 경영은 종전 기업주들이 회장이나 부사장의 자격으로 그대로 운영한 것이常例였다.²⁴⁾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 기업 중에는 그 후 지속적으로 不實의 상태를 면치 못하여 은행들을 不實化시킨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69~71년에 정리된 부실기업 중 산업은행 관리업체 가운데에는 東信화학 三榮하드보드, 大韓종합식품, 朝日공업, 원진레이온(←홍한화섬), 수산개발공사, 대한조선공사, 한국마방, 대선조선 등 9개업체는 1978년까지 산업은행의 관리업체로 남아 있었다.²⁵⁾

③ 1969년에 각 은행들은 한국철강(5.88억원), 한국제강(2억원), 대성목재(5억원), 삼양항해(5.4억원)와 삼양수산, 신흥수산, 신흥냉동(3억원) 등 부실기업으로 정리되는 업체에 투자를 하여야 했다. 80년에도 기계공업 분야에서 한국중공업으로 전환하는 데에 정부와 한전 각각 1천억원 외에 외환은행 650억원, 산업은행 950억원을 출자하였다. 또 효성중공업에 산업은행이(235억원

23) 『현대경영』, 1968. 9 및 『신동아』, 1968. 12.

24) “기업 법정관리의 내막,” 『아코노미스트』, 1980. 6. pp.41 ~ 43.

25) “產銀관리업체의 현황과 처리방안,” 『아코노미스트』, 1978. 5.

의 금융을 추가로 지원하는 외에) 200억원을 출자했다. 개별기업에 대한 이러한 은행의 출자는 금융이 정부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國家獨占資本主義에서 事績 資本의 재생산을 위해 순환상의 公황국면에서 공기업이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8.3조치를 통해 기업은 금리인하로 연간 380억원, 大換금융에 의한 특별금리 적용으로 165억원의 부담을 덜게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총 1,028억원)²⁶⁾ 특별대환은 72년 11월 18일과 12월 20일, 73년 7월 20일 세 차례 실시되어 그 실적이 525억원이었다. 또한 산업합리화조치를 통한 합리화자금으로 금융기관들이 72년과 73년에 모두 356억원을 지원되었다.²⁷⁾ 81년 4월에는 ‘產業合理化 및 투자장려책’을 통해 금리인하, 약 1조 1,400억원의 기업의 구속성 예적금 상계, 예금은행 대출금의 85%를 차지하는 단기대출금의 일부를 장기대출금으로 전환, 수출산업에 대해 2천억원, 중소기업에 1,500억원의 設備資金이 지원되었다.

해외건설 합리화가 실시될 때에 이를 해외건설업체들에 대한 금융기간의 부실채권 규모가 개별 기업정리 중 합리화지정 49개사에 대해 2조 7,507억원, 업종별 합리화 13개사에 대해 1조 49억원, 해운업 관련 8개사에 4,764억원이었다. 합리화조치가 진행됨에 따라 57개 개별정리기업에 대해 원금을 면제한 금액이 9,863억원에 이르고 이자를 유예 또는 감면한 대상 원금이 4조 1,967억원, 원금상환을 유예한 금액이 3,884억원이며 여기에 손실보상 대출금액이 4,608억원에 이르렀다. 또 업종별 합리화 업체 중 7개사에 대해 기존 여신의 이자유예 또는 이자유예조건의 신규 자금지원이 4,611억원이었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1984~87년에 노후 비경제선 처분 지원자금 334억원, 기존 차입금에 대한 유예 및 대환으로 1조 3,605억원, 그리고 신규 운전자금으로 2,325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그간의 公황국면에서 국가가 취한 기업정리를 생각할

26) 전경련, 『'72 민간경제백서』, p.47.

다른 자료에 의하면 금리인하로 445억원, 금융대환으로 215억원 등 모두 1500~1600억원의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부 관계당국이 추정하였다(『동아일보』, 1972. 8. 10). 어쨌든 8.3조치를 통해 기업의 단기차입은 전체 負債의 45.5%에서 22.6%로 감소하였다. 자기자본 비율은 20.5%에서 21.6%로, 총자본이익률은 71년의 1.095에서 2.51%로 개선되었다.

27) 한국은행, 『8.3 긴급경제조치 종합보고서』, 1973.

“산업합리화정책의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과제,” 『조선월보』, 1974에 의하면 지원실적이 448억 원, 합리화기준별 자금지원 실적은 416.12억원으로 되어있다.

때에 특히 이 해외건설업에 대한 정리과정에서 주어진 막대한 금융지원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산업생산의 경우는 과잉축적된 자본을 정리하는데 따라 개별기업의 손실이 커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노동인력의 비중이 큰-특히 한국의 건설업의 경우-건설업에서는 산업생산분야에 비해 정리해야 할 고정자본의 비중이 훨씬 적고 오히려 노동인력은 기업이 정리하는 데에 경제적인 부담을 갖는 것은 아닐 것이다. 주로 경영상의 기준의 손실이 문제로 될 것이나 이는 현장의 특성상 얼마든지 조작가능한 면도 있다. 실제 대부분의 부실해외건설업체들은 타 기업에 인수되기 전 일정 기간동안 은행 또는 타기업의 관리상태에 놓여 있었거니와 이 과정에서 경영부실이 더 커졌다는것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자료에서 시인하는 바이다. 결국 정리되는 부실기업과 인수기업의 共謀에 의해, 또는 인수기업에 의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사실은 한일합섬(금융기관 여신 9,351억원), 한진그룹(8,106억원), 대림산업(7,769억원), 대우그룹(6,419억원), 혹은 동국제강·우성건설·쌍용건설·극동건설·한국화약그룹·벽산그룹 등과 같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원 속에 부실기업을 인수한 재벌들이 그후 그 경제적 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정리가 한창이던 86년에 30대 기업집단의 기부금이 1,206 억 1,600만원에 달했으며 1988년에 한일그룹은 경상이익의 24.7%인 52억 6,300만원, 한진그룹은 10.3%인 133억 7백만원 등을 기분한 것으로 밝혀진 것과 무관하지 않음에 틀림없다.²⁸⁾ 인수기업들은 부실기업을 억지로 떠맡았다는 말들도 많이 했다지만 그 신빙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예컨대 70년대 후반에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가 대우에 인수되기 전에 삼성이 인수토록 정부가 추진했으나 삼성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함을 이유로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는 좋은 反證例가 될 것이다.

⑤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의 규모가 90년 9월말 현재 해외건설 분야에 7,060억원, 해운업에 3,024억원에 이르렀다. 축적기에 정책적으로 대출된 자금들이 국내외 경제여건이 나빠지자 회수불능의 부실채권이 돼버리고 이속에서 은행들도 부실화되어 갔다. 그리고 이를 부문에 대한 대출로 부실하게 된 은행에 대해서는 1조 7,221억원의 한은특융을

28) 『한겨레신문』, 1989. 10. 8.

지원하였다. 1972년부터 83년까지 지원된 韓銀特融의 규모는 모두 1300억원 정도로 대성목재, 삼화, 대봉, 신승 등이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출발부터, 그리고 실시전반이 정치권력에 대해 金融部門이 전혀 무력하게 되는 과정이었다. 韓銀特融은 이른바 '증권파동'이 일어났을 때 62년 4월 18일 금융통화 운영위원회가 증권거래소의 청산거래결제자금을 위한 特融 20억환을 허용하고, 또 한달 뒤에는 180억환을 특별지원키로 결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증권파동에 모두 230억환의 韓銀特融이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정부는 한은법을 62년 5월 24일자로 개정,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붕괴시켰다. 그후 위험자산비율의 허용한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66년 해외차관도입을 계기로 15배에서 20배, 23배, 28배로 변경되다가 69년 은행법 개정에서는 아예 그 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또 지급보증한도도 22.5배까지 늘렸다.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위험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金融의 기본원칙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이같은 정도의 한도는 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81년 이후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韓銀총재의 재량으로 이러한 개별적인 구제금융성격의 응자를 할 수 있게 되기에 이르렀다.²⁹⁾

공황국면에서의 처리는 엄청난 특혜와 함께 이루어졌고 그렇게 돈이 풀릴 때에는 그 외의 모든 부분에는 커다란 자금경색을 가져와서 생산과 생활 전반에 타격을 주었다. 예컨대 85년말의 총통화(M2)는 28조 5,582억원이어서 84년말보다 3조 8526억원(15.6%)이 늘어난 금액이었다. 실물의 성장(GNP의 성장)은 5% 안팎인데 돈의 공급량은 13.9% 증가했으나 物價가 오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돈이 不實企業에 잠겨 사회적으로 환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른 기업체들이나 국민들은 자금경색 상태에 놓였고, 금융기관들은 과행적인 운영 속에 부실화되어 갔다.

3. 行政措置 · 法律的 制度的 介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황과 불황기에서 國家介入은 財政 · 金融의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國家권력의 각종 행정적 개입과 더불어 실시된다. 그동안의 한국자본주의에서 발생한 주요한 행정적 措置들인

29) 한국은행, 『조사월보』, 1962년 1월 ~ 1984년 12월호 ; 『財政』, 1986. 3. 25, 재인용.

1969~71년의 不實企業 정리, 1972년의 8.3 사채동결과 產業合理化정책, 그리고 1979~81년의 投資調整措置와 계열기업정리, 1984~86년의 不實企業 정리 혹은 產業合理化措置들은 모두 행정적 조치를 통해 獨占부문의 過剩蓄積된 資本을 통폐합하고 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국가에 의한 이러한 자본 파괴는 곧 그 기능이 시장기구에 의해 수행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정리된 자본들이 어떠한 것들인가 살펴보자.

1969~71년에 不實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업종별로는 섬유 화학 합판 등 당시 주종품목과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장래의 기간산업들을 포함하며, 업체로는 각 업종에서 주요기업에 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은행들이 인수하여 경영주체를 변경시킨 한국철강·삼화제철·인천제철·한국제강·대성목재·공영화학·대한플라스틱·홍한화섬·내외방직 등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천우사 계열기업으로서 천우사는 무역업계에서 매출액이 7위인 896,136천원이었으나, 순익은 23,226의 적자였고, 대성목재는 1967년 제재 합판업계에서 매출액 2위로서 3,817,682천원, 순이익은 4위 67,179천원이었다. 그외 조선공사의 경우는 차량 선박업계에서 매출액이 2위인 1,598,240천원이었고 순이익이 2위인 98,809천원이었다. 1979~80년에 진행된 중화학투자조정조치 가운데 합병된 발전설비 분야의 현대양행,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과 중전기 분야의 쌍용전기, 코오롱전기 등도 모두 독점적 대자본이었으며, 그 외 전문화조치를 받은 기업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또 '9.27 계열기업 정리조치'를 통해 대자본의 183개 계열기업들이 정리되었다. 1986년 5월 87년 4월까지의 5차에 걸친 產業合理化를 통해 50여사에 달하던 해외건설업체를 20개 내외로 줄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합리화 대상업체로 지정되었는데 이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벌급 기업들의 계열기업이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공황국면에서 비효율적 이더라도 독점자본의 경우에는 그 그룹경영체제 때문에 시장기구의 자연적 작용을 통해 정리가 될 수 없는 것이었고 국가에 의한 강제가 작용하게 되었다. 즉 獨占下에서는 시장기구만으로는 소위 退出이 객관적인 自然의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권력에 의한 자본 파괴는 과정상에 여러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사적 소유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리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단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 그 과정이 일정한 기준 아래 혹은 해당 기업들 스스로의 경영평가 위에 자율적인 선택을 통해

정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상당히 덜어질 수 있을 것이다.³⁰⁾ 그러나 그간의 국가개입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 과정이 공개리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不實企業으로 정리된 측에서는 ‘정치적 타살’, 권력(청와대 또는 안전기획부)의 강요 등을 주장하곤 하였다. 국제, 대한, 선주, 명성, 연합칠강, 울산 등 많은 경우가 그러하였다. 또한 인수받는 기업들에게는 권력과의 密着說이 늘 따라다녔다.³¹⁾

이 때의 처리주체를 보면 비교적 자발적으로 되고 의혹이 없었던 해운업의 경우 ‘산업정책심의회’가, 71년 부실기업 정리에서는 산업은행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업합리화위원회’가, 72년의 산업합리화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합리화심의회’가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추진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1969년의 부실기업 정리 때에 청와대 제3 수석비서관실이 주도하는 등, 대부분의 조치를 청와대에서 직접 처리하였다. 즉 다른 나라와 같이 의회와 언론을 통해 그 과정이 공개되기는 커녕 형식적으로라도 어떤 회의기구를 거치지 않고 최고권력 내부의 밀실에서 처리되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 獨占資本의 입장에서는 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정리대상 기업들의 불만이 커던 것은 물론이며,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그 대상이 될 가능성 아래 있었으므로 전반적으로 그러했다. 그들은 이러한 입장을 1969년의 경우 6월 28일 全經聯 긴급이사회를 통해 ‘부진기업 체 운영개선에 관한 의견’이라는 형태로 정부에 제시하였다.³²⁾ 또한 이후 얼마 동안 자본의 측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주도경제에서 民間주도경제로의 전환, ‘

30) 예컨대 '9. 27 계열기업 정리조치'와 1984~87년의 해운업에서의 산업합리화조치의 경우 비교적 그러했다.

31) 1969년의 경우에도 不實企業의 정리가 진행되고 긴축과 借穀억제 방침이 추진되는 가운데 기업의 운영자금을 위해 현금차관이 도입되었다. 결국 한편에서 자금부족으로 정리되는 중에 옆에서는 현금차관 도입을 승인받아 기업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된다. 대성목재 1천만달러, 헌일합섬 1.3천만달러, 동명목재 5백만달러, 동해 전력 500만달러, 태홍산업 8백만달러, 신진자동차 5백만 달러, 삼미사 440만 달러(선경화섬 400만달러, 한국화성 500만달러, 대명목재 200만달러, 경인화전 400만달러) 등이었다(『동아일보』, 1969. 7. 19, “차관 10년의 해부,” 『기업경영』, 1969. 9.). 이를 현금차관은 연리 10%여서 당시 은행금리 연 24%를 생각하면 엄청난 특혜였다.

32) 그들은 不實기업의 직접적 원인을 정부에서 제시한 것들과 유사하게 밝히고는 근본대책방향에 대해서는 外資도입정책 전환(직합자투자로 전환, 자격 엄선), 不實 소지가 예견되는 사업에 대한 예방조치 강구, 金融의 자주성 확립, 民間사업과 경합되는 국공영기업체 시정 등을 거론하여 국가권력의 직접적 규제에 대한 일정한 반감을 드러냈다.

民間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등을 거론하였다.³³⁾ 1980년 이후의 '민간주도 경제'에 관한 왕성한 논의가 중화학투자조정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高唱되었던 것은 새삼 거론할 나위도 없다. 드물지만 개별적으로 정리조치에 승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창원의 대단위 기계공장을 짓다 投資調整 당시 헌납 형식으로 내어 놓아야 했던 현대양행의 社主는 1991년에 당시의 정산금과 措置과정에서 추가로 내어놓아야 했던 66억원을 포함한 376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³⁴⁾ 연합철강의 경우 법정으로까지 이어져서 동국제강의 연합철강 인수비리를 수사한 부산지검은 인수당시 동국제강과 주거래은행이었던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實查를 의뢰받은 회계법인들이 연합철강의 순자산액을 실제보다 40여억원 감액 평가한 것을 밝혀낸 바있다.³⁵⁾

한편 이러한 자본의 정리·파괴과정이 다른 기업에 대한 부실기업의 합병으로 진행될 때에는 경제적으로 독점이 촉진되는 문제를 낳지만 생산수단의 통폐합으로 전반적인 생산의 효율화는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79~80년의 투자조정의 경우는 조정을 통해 중전기·자동차·밸전설비 등에서 기준에 투자된 고정자본과 도입기술들은 그대로 유휴화되었다. 중전기분야에서는 효성중공업 이외의 현대중전기(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금성계전(차단기), 이천전기(변압기), 신한 및 대명(변압기) 등 업체는 제작설비 및 시험설비가 유휴화되었고 대명을 제외한 4개사의 遊休化設備가 총 66.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⁶⁾ 자동차분야에서도 합리화조치에 따라 생산이 금지된 차종

33) 다음의 자료들에서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좌담-경제불황과 사회불안" 및 김성두, "한국경제의 정치화와 생리," 『신동아』, 1971. 11.

"좌담-민간주도형 경제체제로 가는 길," 『기업경영』, '71. 5. 고영호, "민간주도형 경제와 궁정거래법," 『금융』, 1971. 5.

34) 그러다가 1991년 3월 상공인의 날에 모범상공인으로 표창을 받고, 그 후 소송에 관한 자료는 보이지 않았다(『동아일보』, 1991. 3. 20). 이러한 사실은 정부와 기업간의 거래의 혼란을 남긴다.

35) 『서울경제신문』, 1989. 1. 9.

정리된 연합철강과 인수한 동국제강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우선 매출액으로 볼 때 연합철강은 1984년에 3,384억원, 동국제강 2,862억원이었고, 순이익도 연합철강은 58억원의 흑자를 냈으나 동국제강은 36억원을 냈었다. 기업의 장래성의 면에서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연합철강의 주력품종인 냉연강판과 강판은 유망사업이지만 동국제강의 주력품종인 철근은 사양산업이었다. 세다가 연합 철강은 사급사정이 좋아 국제그룹이 해외금융시장이나 단자시장에서 기채할 때 연합철강의 보증을 빌 성도였다. 정리 직후인 1987년에는 당기순이익이 286억원에 달했다(『이코노미스트』, 1991. 1. 30., 『매일경제신문』, 1991. 1. 30.).

36) 산업연구원, 『한국중기계공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1982. p.528.

을 생산하던 자동차 3사의 폐기시설규모는 모두 4백억원 상당이었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대부분의 시설은 폐기처분하고 일부는 헐값에 賣却·처분하였으며, 일부 금형은 싼 가격에 해외로 역수출하여야 했다.³⁷⁾

이 경우 동일 업종의 여러 기업체 간에 설치된 생산설비가 표준화된 것이었으며 국내 업체 간에 설비의 통폐합을 꾀함으로써 전반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신규투자분의 설비가 대부분 해외의 서로 다른 관련 업체로부터 도입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각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거의 폐기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의 모든 업체의 설비를 해외의 한 업체로부터 도입하는 것은 경제적 종속을 자초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한편 기술상의 문제로서 고유 모델의 차종을 갖 개발하여 생산중인 경우 국산화에 따른 Know-how 및 기타 관련 지식이 사장되었다. 기술도입의 경우 도입한 기술들이 死藏되거나 판매 지역이 한정됨에 따라 기술의 完全傳授가 곤란해졌고, 계약불이행 등으로 기술도입선과의 신용상의 문제를 낳았다. 발전설비분야에서는 삼성중공업 등의 업체들의 설비가 유휴화되었다.³⁸⁾

이렇게 부실기업들이 정리된 뒤 그 후에는 그 기업 및 그 업종이 좀 더 효율적인 경영상태로 전환되어야 당초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는 부분적으로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不實의 상태를 면치 못하여 은행들을 不實化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으로 만들었다. 예컨대 69~71년에 정리된 부실기업 중 산업은행 관리업체 가운데에는 9개업체는 1978년까지 산업은행의 관리업체로 남아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80년의 경우에도 투자조정업종 가운데 자동차·전자교환기·동제련 등은 대체로 80년대 중반에 생산과 경영이 회복되었으나 발전설비·중전기·디젤엔진 등은 80년대 후반까지 회복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86년의 產業合理化措置를 통해 다시 국가의 지원을 실시해야 했다.

부실기업 정리가 이런 결과를 낳는 데에는 개별 기업의 경영능력 차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나 경제 전반에 관해서는 결국 제도적인 문제 혹은 축적구조상의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관리제도 혹은 은

37) 현대자동차(주)『현대자동차 20년사』, 391~394.

38) 산업연구원, 『한국 중기계공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1982.

행 관리제도가 갖는 문제는 앞에서 검토했거나와 아직 생산의 경험에 없어 국제 경쟁력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시장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生產能力을 갖춘 투자를 했을 때,³⁹⁾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국면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는 정상적인 기업의 투자라기 보다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일종의 투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극히 취약한 재무구조 아래에서 생산의 선점을 노리는 독점자본간의 무리한 경쟁에 따른 결과일 뿐일 것이다.

그 외에도 國家는 잔존하게 된 資本에게는 가치실현을 위한 각종 措置를 통하여 그 蕩積을 가능케 하였다. 수출의 비중이 큰 경제구조에서 대표적인 수단이 환율을 절하시켜 수출을 촉진하는 외환상의 조치일 것인 바, 1969~72년과 1980~85년에 환율을 크게 절하시켰다. 이렇게 해서 고축적기인 1965~68년의 수출증가율 40.0%, 1973~78년의 43.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969~72년과 1980~85년에 각각 37.7%, 12.6%의 비율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율 인하는 외채부담이 큰 상태에서는 외채의 상환부담을 그만큼 가중시켜 공황의 깊이를 더하였으며, 한국상품의 대외교역조건을 악화 시킨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다.

아울러 소위 국내 자본의 국제경쟁력의 필요성 또는 해외자본의 안정적인 활동기반 조성을 위해, 이들 시기에 유신과 5공화국 정권에 의해 각종 노동입

〈表 4〉 새로운 循環週期를 위한 各種 措置

年度	措置의 内容
1969	전자공업진흥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자동차공업육성계획
70	조선공업진흥기본계획
73	중화학공업화선언(대통령), 중화학건설원칙(상공장관), 우리경제의 장기전망(경제기획원 장관)
80	중소기업육성 헌법 條文化,
8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공정거래법
82	중소기업 진흥 장기 10개년 계획, 5개 중소기업 관계법 개정 보완 기술진흥학회의, 기술진흥심의회 핵심거점기술 선정, 대덕연구단지 조성,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설립 외국인 투자제한 축소, 상품 자본 금융시장 개방 확대

39) 가령 발전설비 분야에서는 1982년 현재 국산기자재 수요에 대해 2.7배의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한 상태였고, 한국중공업의 가동율은 35%였다.

법이 改惡되는 등 노동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었다. 노동계급에 대한 이런 점에서 이 시기의 산업합리화조치 또는 구조조정정책이 선진공업국의 2차대전이 전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후의 蕩積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각종 財政·金融 상의 지원을 베풀어 새로운 蕡積주기가 시작되게 하는 중장기적인 조치들도 실시되었다.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해 보면 <表 4>와 같다.

V. 結論

국가가 경제과정에 일상적으로 개입하게 된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週期的인 산업순환이 해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독점적인 경제구조가 일반화됨으로써 일단 발생한 공황이 훨씬 지속적이고 만성화되었다. 이 때문에 국가는 경제에 일상적으로 개입하면서 공황국면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그리고 경제전반에 질적 변화가 촉발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많이 거론되는 산업정책—산업합리화조치 그리고 산업구조조정정책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그간의 한국경제에서 있었던 전반적인 공황 혹은 부문공황들을 검토하였다. 또 그때 진행된 국가개입을 재정을 통한, 금융을 통한, 그리고 행정조치 및 법률적·제도적인 개입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에서 그동안 전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많은 문제들 예컨대 부동산 및 주식투기, 과소비 등의 문제 등은 민족성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도 작용하였겠지만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고유한 현상으로서 발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주기적인 공황의 발현형태는 그 축적과정에서 누적된 부실함 破行性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재와 축적기금을 외부에 의존함에 따라 공황이 발현되는 데에 외환 및 외채위기가 결정적인 매개역할을 한 점, 부채에 의존한 독점적 대자본 간의 과열된 축적경쟁으로 더욱 심화된 과잉의 자본을 공황국면에서 국가가 강제로 정리하여야 한 점, 상호지급보증 등 생산성외적인 방법으로 철옹성을 구축한 독점자본 계열기업의 경우 退出의 장치가 전혀 결여된 점, 순환적으로 격화되는 투기현상을 잘못된 富의 분포와 잘못된 국가정책이 더욱 악화시켜 공황국면을 그만큼 심화시킨 점 등을 모두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 만큼이나 국가의 개입 면에도 부실함, 과행성이 현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의 구조적 운영을 통해 다소라도 안정적 순환국면이 형성되기 보다는 호황기에 축적을 위한 온갖 지원들이 퍼부어지다가 공황국면에서는 극히 비효율적으로 거의 폭력적인 뒷처리를 행정조치의 방법으로 강행하여 온 것이 그간의 사정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금융은 과행적으로 운영되어 부실해져 있고 정부개입의 密室性과 慮意性은 경제 및 사회전반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국가 개입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일상적으로 모든 정보가 국민에게 완전 공개되는 가운데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국민적으로 참여가 보장됨으로써 그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현실은 이런 점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황국면에서의 그동안의 국가개입이 모두 통화증발과 인플레를 야기하는 반면 여타의 부문에는 자금압박을 강요하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금융상의 지원을 수반하였고, 이러한 조치들이 노동임금에 대한 강권적인 억압과 함께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계급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附 錄〉

參考資料

1. 建設部, 『地價動向』, 1990. 5.
2. 經濟企劃院, 『經濟白書』, 各年度.
3. _____,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4. _____, 主要統計月報, 各年度.
5. _____, 『韓國經濟指標』, 1986.
6. 經濟企劃院 重化學工業推進委員會, 『重化學工業政策史』, 1979.
7. 國會, “銀行別 個別不實企業調理,” 『5共特委要請資料』.
8. 大韓金融團, 『金融』, 各號.
9. 大韓工商會議所, 『韓國의 工業化過程과 產業政策』, 1974.
10. 東亞日報社, 『東亞年鑑』, 各年度.
11. _____, 『新東亞』, 各號.
12. 產業研究院, 『韓國 重機械工業의 問題點과 政策方向』, 1982. 12.

13. 商工部, 『商工白書』, 1986~1990, 各年度.
14. 이코노미스트사, 『이코노미스트』, 各號.
15. 財務部, 『決算概要』, 各年度.
16. _____, 『韓國의 財政統計』, 各年度.
17. 財政公論社, 『財政』, 各月號.
18. 全國經濟人聯合會, 『72年 民間經濟白書－景氣回復과 產業高度化』, 1973.
19. _____, 『韓國經濟政策 40年史』.
20. _____, 『全經聯』, 各號.
21. 重化學工業推進委員會 企劃團, 『重化學工業政策史』, 1979.
22. 韓國鑑定院, 『全國 主要都市 地價指數』, 1975.
23. 韓國開發研究院, 『韓國金屬工業의 展望과 政策課題』, 1981.
24. _____, 『韓國開發研究』, 各號.
25. _____, 『經濟安定化政策 資料集』, 上·下.
26. 韓國能率協會, 『現代經營』, 各月報.
27. 韓國產業銀行, 『開放體制에 대비한 產業合理化 方向』, 1977.
28. _____, 『產業技術 動向』, 1991. 8.
29. 韓國生產性本部, 『企業經營』, 各號.
30.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31. _____, 『調査月報』 및 『調査統計月報』, 各月報.
32. _____, 『週中海外經濟動向』, 1989, 各號.
33. _____, 『8·3 緊急 經濟措置 綜合報告書』, 1973.
34. 現代自動車(株), 『現代自動車 20年史』, 1987.
35. 『東亞日報』, 『每日經濟新聞』, 『서울經濟新聞』, 『한겨레신문』, 『エコノミスト』.
36. 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年報』, 1982~1988.
37. 日本外務省アシシ局 北東アジア課, “韓國における不實企業の實態,” 『經濟評論』, 1975. 8.
38. 日本銀行 調査統計局, 『外國經濟統計年報 1982』, 1983.
39. 通商產業省, 『產業合理化白書』, 日刊工業所新聞社, 1957.
40. _____, 『產業構造の長期ビージョン』, 1974.
41.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1.

參 考 文 憲

1. 金漢應, 『企業金融政策과 株式市場 育成』, KDI, 1987.
2. 金載勳, 『80年代 韓國經濟의 構造와 性格』, 『학술단체 연합심포지움 논문집, 80年代 韓國 人文社會科學의 現段階와 展望』, 역사비평사, 1987.
3. _____, “韓國資本主義에서의 ‘產業循環과 國家介入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1.
4. 李景台, 『產業政策의 理論과 實際』, 產業研究院, 1991.
5. 이국영, “新韓國秩序와 國民國家 性格의 再照明,” 『社會批評』, 제7호, 1992.
6. 이수훈, “資本主義 世界經濟論,” 한길사, 1991.
7. 黃炳德, “미국의 해계모니 危機와 資本主義 世界體制,” 尹謹植 編, 『現代國際政治論』, 1991.
8. 大内力, 『現代の景氣と恐慌』, 有斐閣, 1978.
9. _____, 『國家獨占資本主義』, 東京大 出版會, 1979.
10. 大石喜一朗, 『日本產業革命の研究』, 東京大出版會, 1975.
11. 藤森英男, “Asia諸國における産業政策の意義,” 藤森英男, 『Asia諸國の産業政策』, Asia經濟研究所, 1990.
12. 北原勇, 『獨占資本主義論』, 1984(金載勳 譯, 1986).
13. 小宮隆太郎, “序章,” 小宮隆太郎 外 編, 『日本の産業政策』, 東大出版會, 1984.
14. 小松善雄, “現代恐慌と恐慌=循環論争,” 『經濟評論』, 1976. 4.
15. 林直道, “世界不況の現局面と將來,” 『經濟』, 1975. 1.
16. 長島誠一, 『現代資本主義分析 6, 現代資本主義の循環と恐慌』, 岩波書店, 1987.
17. 井汲卓一 外 編, 『現代帝國主義講座 5』, 日本評論新社, 1963.
18. _____ 編, 『講座 恐慌論 1, 景氣循環の形態變化』, 東洋經濟新報社, 1958.
19. 條原三代平 馬場正雄, 『現代產業論3－產業政策』, 日本經濟新聞社, 1973.

20. 川鍋正敏, “戦後恐慌の新しい性格について,”『エコノミスト』, 1973.
21. 平川均, “プラント輸出と第三世界の工業化(上, 下),”『世界經濟評論』, 1983. 10~11.
22. 鶴田滿彦, “戦後 日本資本主義研究の到達點と課題－産業循環・恐慌,”『經濟』, 1986. 7.
23. Adams F.G., and S.Ichimura, “일본의 산업정책,” *Industrial Policy for Growth & Competitive*, 1983(홍문신·강두룡 역, 『산업정책의 이론과 실제』, 산업연구원, 1986).
24. Altervater, E., J.Hoffman, and W.Semmler, *Vom Wirtschaftswunder zur Wirtschaftskrise*, 1979.
25. _____, “Bruch und Formwandel eines Entwicklungmodells,” J., Hoffmann(Hrsg.), *Überproduktion, Underkonsumption, Depression*, 1983.
26. Balassa, B., “Trends in International Trade in Manufactured Goods and Structural Change in the Industrial Countries,” L. Pasinetti and P. Lloyd(eds.), *Structural Chang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orld Development*, Vol.3, IEA, 1987.
27. Bowles, S., D.Gordon, and T.E.Weisskopf, *Beyond the Wasteland*, 1984.
28. _____, “Two Views of Capitalist Stagnation : Underconsumption and Challenges to Capitalist Control,” *Science and Society*, Fall, 1985.
29. Boyer, R., *Capitalism Fin de Ciecle*(김진엽 역), 1987.
30. _____, *La Théorie de la Régulations : Une Analyse critique*, 1986(정신동 역, 1991).
31. Черников, Г., *The Crisis of Capitalism and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People*, 1980.
32. Далин, С., “世界部門恐慌,”『世界經濟と國際關係』, 1980. 6.
33. Fine, B., and L.Harris, “State Expenditure in Advanced Capitalism : A Critique,” *New Left Review*, No.98.
34. _____, 『Re-reading Capital』, 1978(金秀行 譯, 『現代政治經濟學入門』,

1984).

35. Galbraith J.K., "Congress and the Industrial Policy Debate," S. Zubin(ed.), *Industrial Policy*, Praeger, 1985.
36. Gough I., "State Expenditure in Advanced Capitalism," *New Left Review*, No.92, 1975.
37. _____,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1979.
38. Harrison, B., "Eight These on Crisis and Reindustrialization," S. Zubin(ed.), *Industrial Policy*, Praeger, 1985.
39. Helleiner, G.K., "The New Industrial Protectionism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P.K. Ghosh(ed.), *International Trade and Third World Development*, 1984.
40. Jessop, B., *The Capitalist State*, 1982.
41. Katzenstein, P.J,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Industrial Policy in Europe*, Cornell Univ. Press, 1987.
42. Katzenstein, R., *Die Investitionen und ihre Bewegung im staatsmonopolistischen Kapitalismus*, 1967, 森啓子譯, 『國家獨占資本主義と再生産』, 1971.
43. Landerberg, M., "Export-led Industrialization," R. Peet(ed.), *International Capitalism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Allen & Unwin, 1987.
44. Linder, S.B., *An Essay on Trade and Transformation*, 1961.
45. _____, *Trade and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1967.
46. Lipietz, A., *Mirages et Miracles*, 1985.(김종한 외 역, 1991).
47. Marx, K., Capital III.(金秀行 譯).
48. _____, *The Theories of Surplus Value*,(역서 백의출판사)
49. Милековский, А., "國家獨占的規制と產業循環," 『世界經濟と國際關係』, 1973.
50. Меньков, С., "經濟循環の若干の問題について," 『世界經濟と國際關係』, 1973.
51. OECD, 『적극적 조정정책—구조적 변화의 관리』(產業研究院 譯), 1983.
52. Pelinka, A., "Industrial Democracy in Europe and the Prospect for Industrial Policy," W.A. Lovett (ed.), *World Trade Rivalry—Trade Equity*

- and Competing Industrial Policy*, 1987.
53. Rosier, B., *Les Théories des Crises Économiques*, 1987.
54. Sherman H., *Stagflation*(조원희 역, 『스태그플레이션』, 종로서적, 1982).
55. Юданов, “小工業國の獨占體にかんするレーニンのとその現代的 地位,” 『世界經濟と國際關係』, 1969.
56. Vigier J.P., “The Crisis and the Third World War,” *The World Economic Crisis*, 1980.
57. Warren, B., “Capitalist Planning and the State,” *New Left Review*, No.72, 1972.
58. Yaffe, D., “The Crisis of Profitability : A Critique of the Glyn-Sutcliffe Thesis,” *New Left Review*, No.80, 1973.
59. _____, “The Marxian Theory of Crisis, Capital and the State,” *Economy and Society*, Vol.2 No.2, 1973. 5.